

2021년도 신성장동력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시행공고

2021년도 '신성장동력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의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및 기관(조직)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2. 8.

(사)한국BI기술사업화협회장

I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전문기관의 전략적 컨설팅 지원을 통해 기업의 수요 및 애로를 해결하고, 장기적으로 산업 내 지속 가능한 기술사업화 체계를 구현하여 수행역량을 강화

2. 사업목표

- 사업화 역량 강화 및 기술거래 활성화
- 수요자 선택형 컨설팅 지원 및 지원 체계 고도화
- 경험 및 전문성을 활용한 기술사업화 업계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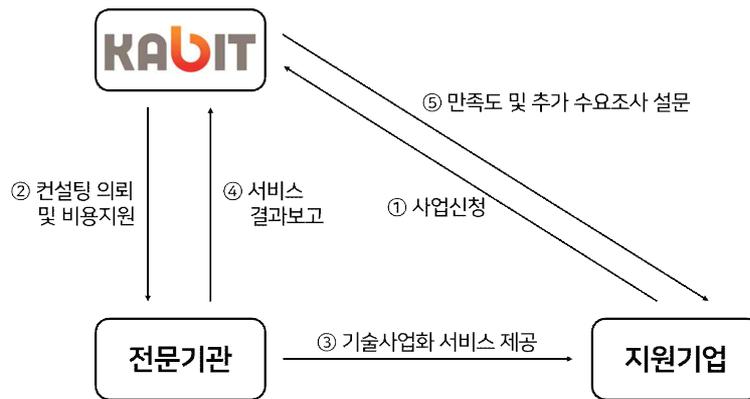
3. 사업기간

- 1차 : 2021년 3월 2일 ~ 2021년 6월 30일
- 2차 : 2021년 8월 ~ 2021년 11월 (예정)

4. 사업형태

- 기술사업화 바우처를 통한 기술의 사업화 컨설팅 서비스

5. 추진체계



1. 기술사업화 서비스 항목

구분		총 지원금	신성장동력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서비스 항목	비고
대분류	중분류			
1. 기술 사업성 분석 (1,600)	1-1. 사업수행 능력 분석	150 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부자원 평가 - 보유자원(설비/자금/인력/조달 등), 조직능력, 기술인프라, 경영진/팀워크 수준 등 	선택
	1-2. 기술성 분석	400 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기술의 혁신성 및 성장동력 가능성 평가 - 핵심 특허 정량/정성 분석, 경쟁력 분석 - 기술 포트폴리오 검토 및 특허 전략 수립 	필수
	1-3. 시장성 분석	350 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 활용 제품의 시장 진입 및 점유 가능성 평가 - 시장현황, 경쟁 요인, 경쟁력 분석 등 	필수
	1-4. 사업성 분석	400 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제품의 수익성 및 경제성 평가 - 제품화 역량 및 투자규모 적정성 - 수익 전망 및 투자 회수 가능성(수익실현 가능성) 	필수
	1-5. 위험도 및 성장성 분석	300 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변화에 따른 위험요소 확인 후속 연계 서비스 및 방안 제안 	선택
2. BM 기획 (1,600)	2-1. R&D 및 제품 개발 점검	350 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개발 및 상용화 방향 확인 기업 적정기술 탐색 및 확보 계획 - 특허 포트폴리오 구성 또는 R&D 실행 계획 수립 	선택
	2-2. BM 기획	500 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AS-IS 및 TO-BE 도출 - 사업진단 및 성장로드맵 구성 선정 기술 BM 도출 - 최적화 BM 제안 	필수
	2-3. 생산 및 마케팅 계획	300 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품 생산 및 판매계획 수립 시장 진입 및 제품 마케팅 전략 제시 	필수
	2-4. 소요자금 조달계획	350 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요자금 규모 산정 자금조달 전략 로드맵 수립 - 정책기관/투자기관 활용 계획 제시 - VC연결 및 IR자료 제작 지원 	필수
	2-5. 상용화 지원	100 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 재정지원 사업 추천 및 방향성 제안 	선택

※ 필수항목의 개별 선택은 불가하며, 선택항목만 선택 가능

※ 본 서비스항목은 전체 컨설팅 서비스 신청비용에 따라 바우처 발급 수가 조정될 수 있음

2. 기술사업화 서비스(컨설팅 비용) 지급

○ 정부지원금 범위 내 바우처 제공

- 지원기업은 기술사업화 서비스 항목에 따라 원하는 서비스 선택
- 기업 지원금액은 기술사업화 서비스(컨설팅) 신청내용 타당성 및 결과 등을 검토하여 바우처 쿠폰으로 발급(바우처 쿠폰의 발급은 주관기관 추천에 의해 전담기관에서 수행)
- 기업은 지원금액 대비 **부담금 25% 이상**을 납입해야하며, 정부지원금 최대 1,200만원 지원
- 지원금액 및 기업부담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 (단, 지원금은 만원단위 반올림, 절사하여 지급)

- 지원항목의 모든 서비스 선택 시 총 지원금 1,600만원 (정부지원금 1,200만원, 자부담금 400만원)
- 부분 선택시 기업자부담금은 총 지원금의 25%로 책정
(예시1) 1. 기술성분석의 필수사항(1-2.기술성 분석/ 1-3.시장성분석/ 1-4.사업성분석) 선택시 총 지원금 1,150만원(정부지원금 860만원, 자부담금 290만원)
(예시2) 2. BM기획의 필수사항(2-2.BM기획/ 2-3.생산 및 마케팅 계획/ 2-4.소요자금 조달계획) 선택시 총 지원금 1,150만원(정부지원금 860만원, 자부담금 290만원)

○ 바우처 제공 방법

- 지원기업의 기술사업화 서비스 지원금은 바우처로 지급하며 서비스기간은 협약 일로부터 3개월 이내임
- 지원기업은 선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자부담금 입금, 입금확인증을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바우처 발급 진행 가능
- 기술사업화 서비스 전문기관의 컨설팅 최종 결과는 지원기업 만족도와 외부전문위원의 평가를 통해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기술사업화 서비스(컨설팅)을 보완토록 할 수 있음
- 기술사업화 서비스 전문기관에게는 컨설팅 수행을 위해 총 지원금액에서 선급금(50%)을 우선 지급하고 지원기업의 만족도 및 외부 전문위원의 평가 결과에 따라 남은 잔금(50%)을 지급

선급금		잔금			
매칭 후 발급		평가위원회 결과평가	지원기업 만족도 평가	바우처 잔금 지급	
바우처 선급금	50% 지급	70점 이상	70점 이상	100% 지급	-
		70점 이상	70점 미만	80% 지급	
기업 자부담금	100% 지급	70점 미만	70점 이상	70% 지급	
		70점 미만	70점 미만	지급 없음	다음 회차 참여 제한

1. 신청자격

○ 지원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 산업 분야의 제한은 없으나, 산업부의 **5대 신산업 프로젝트(전기/자율주행차, 반도체/디스플레이, IoT가전, 에너지 신사업, 바이오헬스)** 관련 기술사업화 애로기업에 대해 우선 지원.
 - 사행사업 등 일부 업종은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
- ▶ 기 지원기업은 동일 서비스 재지원이 불가하며, 선정탈락 기업의 재지원은 제한 없음.

○ 기술사업화 서비스 전문기관

-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조직
 - ※ 기술사업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 및 조직 중 민간 전문기관 (공공기관, 대학 등 공공성이 있는 기관은 참여대상에서 제외)
 - ① 기술사업화 관련 서비스 경험이 있으며, 기술사업화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전담인력 2명 이상이 상시 근무하는 기관 및 조직
 - ② 바우처 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기술사업화 관련 서비스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기관 및 조직
- ▶ 전문기관은 지원기업과 연간 **최대 2개까지만**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 ▶ 신청자격 적정성
 - 기술사업화 서비스 전문기관 예시 참고

【기술사업화 서비스 전문기관 예시】

구분	비고
사업화전문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
기술거래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기술평가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한 기술평가기관
특허법인	「변리사법」 제6조의3에 의해 설립된 특허법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업자	「여성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
연구개발서비스전문기업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	기타 기술사업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 전문기관

2. 신청기간

구 분	추진일정	비고
1차 지원기업 모집	'21.3.8.(월)~3.12.(금) 18:00	* 1~2차 기업 수요에 따라 예산 조기 소진 시 종료
2차 지원기업 모집	'21년 8월 예정 *추후 홈페이지 통해 공지 예정	
지원기업 선정	예산규모, 지원기업 수, 평가점수 순서에 따라 우선 지원기업을 결정하고 차기 지원에 추가 모집할 수 있음	

※ 신청기간 및 접수기간이 상이하므로 유의 요망

3. 신청방법

지원기업	▶ 신청양식 작성 후 온라인 제출(사업관리시스템 업로드) * 신규창업기업 신청 가능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대신하여 창업 계획 자료 첨부)
전문기관	▶ 신청양식 작성 후 온라인 제출(사업관리시스템 업로드) * 전문기관은 연간 최대 2개 기업까지만 수행 가능

4. 구비서류

구분	서 식 명	내 용	비고
지원기업	신성장동력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신청서 (지원기업)	· 신청서	* 공통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2020년 재무상태표 3. 2020년 손익계산서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미 결산 시, 추정 재무제표 제출
		· 수요조사서	
		·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공정 및 청렴 서약서	
전문기관	신성장동력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신청서 (전문기관)	· 자부담 성실납부 이행서	
		· 신청서,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현황	
		· 기관후보단 선정 공개자료	
		·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공정 및 청렴 서약서	
· 보안각서			
· 개인별 컨설턴트 현황			

5. 추후일정

구 분	일정	주체	비고
신청 및 접수	'21.3.8.(월)~3.12.(금)	지원기업, 전문기관	
후보단 선정 평가	3.17.(수)	주관기관	
기업/기관후보단 공개	3.18.(목)~3.22.(월)	주관기관	
전문기관 희망순위선택	~3.22.(월)	지원기업	
수행계획서 제출	~3.26.(금)	지원기업, 전문기관	
매칭 평가	3.31.(수)	주관기관	
결과 공지	~4.5.(월)	주관기관	
이의 신청	~4.5.(월)	지원기업, 전문기관	
협약체결	4.8.(목)	지원기업, 전문기관, 주관기관	

※ 일정은 추후 변동이 가능하며, 변동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예정

6. 사업 프로세스

순서		수행내용	실행주체
①	공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공고 (지원기업 및 전문기관 신청) - 홈페이지 : KIAT, (사)한국BI기술사업협회 등 - 2021년 신성장동력 바우처 지원사업 공고 	주관기관
②	사업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기업 → 사업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접수 및 신청 ■ 전문기관 → 사업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접수 및 신청 	지원기업 전문기관
③	후보단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기업후보단 확보 - 신청기업 중 기업진단들을 이용하여 1.5배수 선정 ■ 기관후보단 확보 - 신청전문기관 중 전문기관 평가표를 이용해 최소 자격 요건에 미달하는 기관을 제외한 전문기관을 서비스 공급 Pool에 등록 	주관기관
④	후보단 공개/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후보단 공개 -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선정된 기관후보단 세부사항 공개 ■ 기업후보단 개별 안내 및 희망 전문기관 선택 - 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사업화 전문기관 선택(1순위~3순위) 	주관기관 지원기업
⑤	선정평가 (매칭)/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 전문가의 서면평가를 통한 최종매칭 - 지원기업의 수행계획서 평가 결과 및 희망순위로 전문기관 컨설팅 매칭 여부 타진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선정 및 매칭 결과 통보 	주관기관
⑥	협약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자(지원기업, 전문기관, 주관기관) 협약체결 ■ 구비 서류확인 후 1차 바우처 KIAT 발행 및 지급 ■ 담당 컨설턴트 공정서약서 및 공정윤리교육 진행 	지원기업 전문기관 주관기관
⑦	서비스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 및 협약에 따라 전문기관은 기술사업화 서비스 실시 ■ 착수확인서/중간보고서 제출을 통한 컨설팅 현황 파악 ■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가동 : 지원기업 현장 애로상담 실시 ■ 전문기관 컨설팅 역량 강화 교육 : 기술사업화 성과 상향 표준화 ■ 중간점검간담회 개최 : 중간보고서 수집을 통한 진도관리 ■ 소규모네트워크 개최 : 권역별 기업/기관 네트워크 구축 ■ 성과공유회 개최 : 우수사례 선정을 통한 성과 확산 	전문기관 주관기관
⑧	완료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기관은 지원기업, 주관기관에게 컨설팅완료보고서 제출 - 컨설팅 완료확인서 및 사업비 청구서 제출 	전문기관
⑨	완료검토 및 평가, 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기관 서비스 수행내용의 적정성 검토 및 서면평가 - 필요시 검토결과 보완 또는 재 서비스 요구 ■ 지원기업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 조사 ■ 주관기관은 전문기관에게 서비스 비용 지급 및 정산 	주관기관
⑩	사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기업 성과 관리 - 지원기업 및 전문기관의 사후관리 현황 모니터링 및 우수사례 도출 - 지원기업 네트워크 구축 및 기업-전문기관 연계 ■ 지원기업 추적 관리 - 컨설팅 종료 후 사업화 진행상황 관리 - 전년도 지원기업에 대한 추적 관리 수행 - 추가 컨설팅 의뢰 ■ 타 지원사업 연계 - 지자체 사업 연계 지원 (지역 테크노파크 사업 등 후속연계지원) 	주관기관 전문기관
※ 상기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관련 법령과 고시를 준용한다.			

IV

관련법령

1.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등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등

2. 준용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부속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규정참고 : 홈페이지(<http://pms.re.kr>) → 규정 및 서식

VI

유의사항

- 지원대상 제외사항
 - 사업에 참여하는 자(지원기업, 기술사업화 서비스 전문기관, 대표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지원제외 대상

-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사업에 부적합 업종영위 기업
ex)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담배, 주류 중개·도매업 등
- 휴·폐업중인 중소·중견기업,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지원가능
- 신청 서비스 내용이 기 지원받은 컨설팅 내용과 유사·중복으로 판명된 경우
* 동 경우, 사업 수행중이거나 완료 이후라도 발견 시 실패 및 환수 처리
- 전문기관의 관련 전문자격자(전문가) 관련 용역 서비스 협약을 기 체결한 상태에서 신청하거나 활용하는 경우
- 지원기업 또는 전문기관(전문가, 컨설턴트)이 허위로 수행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원기업 또는 기술사업화 서비스 전문기관이 허위로 신청 및 수행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 기술사업화 바우처 신청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신청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 서비스의 내용이 기술사업화 바우처 사용 가능 항목별 기본목적, 기술사업화 서비스 특성,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 공고 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 서비스내용이 이미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내용과 유사·중복인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 창업 2년 이상인 기업이 서면평가 전까지 재무제표(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경우만 인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증빙하지 않은 경우

※ 국세·지방세, 채무불이행 및 의무사항불이행의 경우, 과제 선정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는 예외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등록 취소

- 기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과제의 중간탈락

- 과제수행 중 진도점검 및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 있으며, 불성실 중단의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환수의 제재 조치될 수 있음

VII 접수 및 문의처

○ 접수기간

온라인 : 2021년 3월 8일(월) 09:00 ~ 3월 12일(금) 18:00

* 3월 12일(금) 18:00까지 제출서식에 맞춰 작성하고, **온라인(사업관리시스템)** 제출완료한 과제까지만 인정(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처

온라인 : 한국BI기술사업화협회 관리시스템 : (<http://bivoucher.kabit.or.kr/>)

○ 문의처

	담당기관	연락처	이메일	내용
주관기관	(사)한국BI기술사업화협회 (www.kabit.or.kr)	02-3487-3703	yjkim@kabit.or.kr	사업운영 및 서비스 신청 문의



2021년 신성장동력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수요조사서

※ 작성 양식은 각각 내용에 맞게 자유롭게 작성(표 삭제가능)
※ 특정 컨설팅 전문기관명을 기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 요망

[기업명 :]

I. 사업개요

1. 사업수행 배경 및 목적

- 기술사업화 수행 배경 및 필요성, 과제추진 목적, 규모 및 내용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술
- 대상기술의 간략한 내용 및 기존기술과의 차별성, 산업 동향에 따른 사업전략과의 관계 제시

2. 사업수행 개요

-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의 참여배경 및 목적에 맞추어 사업화 추진방향 및 내용을 중심으로 필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기술

3. 대상기술 현황

- 기술사업화 대상기술의 개발 현황 또는 외부로부터의 확보 계획을 기술
- 기술사업화 대상 기술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 회사 자체 분석 내용 제시

4. 컨설팅 수요 내용

- 기업의 컨설팅 니즈와 목적을 명확하고 함축적으로 표현하여 기재
- 동 사업 컨설팅 수행의 목표 및 도출하고자 하는 결과물을 요약 제시
- 동 사업을 통한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활용계획 기술

5. 결과 활용 계획

- 동 사업의 니즈 및 목적에 맞게 개선 방향을 제시
- 동 사업의 예상 산출물에 대한 활용방안 제시

6. 기대 효과

- 신청 기술의 사업화를 통해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 산업적 파급효과 등 기술
- 동 사업의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활용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 및 효과 제시

7. 내부 조직도 및 수행역할 분담

- 신청 기업 내부 조직도 및 동 사업 관련 수행 역할분담 내역을 상세하게 제시
(기술개발 전담조직, R&D 부서 등 상세 내용)
- 동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지원기업과 기술사업화 전문기관과의 협력방안 제시

8. 세부 추진일정

세부 추진내용	담당자	세부 추진기간															
		*월				*월				*월				*월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II. 신청기업 현황

가. 총괄책임자 주요 이력

성명			과학기술인번호		
최종학위	ex) 학사, 석사, 박사		전공		
경력	연도	기관명	직위	주요 업무	
	~				
	~				
	~				
기타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상경력 ○ 관련 자격 ○ 특허 출원 및 등록 등 				

나. 주요인력 현황 (총 ___인)

성명	부서	직위	과학기술인번호	학위	담당업무 및 역할	경력연차

※ 기술사업화 서비스 지원사업 참여 인력

다. 최근 3년간 공동연구, 기술협력, 정부지원과제 참여 실적

번호	지원사업명 (시행부처/기관)	과제명	기간 (시작-종료일)	총정부 출연금(천원)	주관/공동/ 위탁	세부 내용 (기술이전 등)
1						
2						
3						

※ 기술협력 및 사업화 관련사업(컨설팅) 포함

라. 인증 및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번호	종류	발행번호	발행처	명칭
1				
2				
3				

마. 재무현황

번호	구분	최근 3개년 (단위 : %)			참고 *계산식
		2018	2019	2020	
1	R&D 투자비율				연구개발비/매출액 × 100
2	영업이익률				영업이익/매출액 × 100
3	자본수익률				순이익/자기자본 × 100
4	부채자본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기업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지원기업]

(사)한국BI기술사업화협회장 귀하

- 본인은 「신성장동력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및 제반서류(신청서, 수행계획서 기타 서비스지원사업에 필요한 서류 일체)에 기재된 기업(신용)정보 및 관련된 기업(신용)정보 (대출, 보증, 담보, 제공, 당좌거래 등 금융정보, 지원사업 신청 이전 및 이후 취득한 기업 (신용)정보 포함)를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 제공이용자 등에게 제공하여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로써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신성장동력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을 지원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신청서, 수행계획서, 기타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서류 일체) 제출 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선정 결정 취소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 상기 사항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전담, 주관기관에서 기업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기업체명 :

과학기술인번호 :

대표자 :

(인)

* 본인은 기업신용정보 제공·활용 및 이용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신용정보업자를 통한 귀사의 신용조회사실이 귀사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성장동력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공정 및 청렴 서약서

『신성장동력 기술사업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신청인 000 (이하 “**본인**”)은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 ① 본인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주관기관, 전담기관, 전문기관 직원은 물론 누구에게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청탁 및 일체의 금품, 향응을 제공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 ② 본인은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진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 ③ 본인은 기술사업화 전문기관에게 기업부담금 대납요구(지불)를 절대 하지 않을 것이며, 전문기관으로부터 사업수행에 대한 불공정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단호히 거절할 것을 약속합니다.

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향후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사업의 참여 제한, 지원 선정 취소 등의 어떠한 불이익 처분이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2021년 월 일

위 신청인 지원기업명 :

대표자 : (인)

(사)한국BI기술사업화협회장 귀하

[첨부서류1-1] 사업자등록증 사본(지원기업)

[첨부서류1-2] 2020년 재무상태표(지원기업) **미 결산 시, 추정 재무제표 제출*

[첨부서류1-3] 2020년 손익계산서(지원기업) **미 결산 시, 추정 재무제표 제출*

[첨부서류1-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지원기업)

□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현황

가. 참여 책임자 주요이력

성명		과학기술인번호	
최종학위	ex) 00 대학교 석사		전공
담당업무 및 역할			관련경력
경력	연도	기관명	직위
	~		
	~		
	~		
기타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상경력 ○ 관련 자격 및 교육이수 등 ○ 특허 출원 및 등록 등 		

나. 컨설팅 가능인력 현황 (상근인력만 작성)

성명	직위	과학기술인번호	학위	분야경력	담당업무 및 역할	비고 (자격, 교육 등)

다. 최근 3년간 사업실적(컨설팅 및 유관 정부과제만 기재)

번호	사업명	기간 (시작-종료일)	발주기관	사업규모	세부내용
1					
2					
3					
4					

기업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전문기관]

(사)한국BI기술사업화협회장 귀하

- 본인은 「신성장동력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전문기관 등록을 위해 제출한 제반 서류(신청서 및 등록서류 일체)에 기재된 기업신용정보(지원사업 신청 이전 및 이후 취득한 기업 신용정보 포함)를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 제공·이용자등에게 제공하여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로써 활용하거나 공공 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전문기관으로 등록될 경우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재무현황, 서비스 분야, 실적, 수행 후 등급평가결과 등)를 사업관리시스템에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성장동력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을 지원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신청서, 등록 서류 일체)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사업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 결정 취소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 상기 사항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주관 및 전담기관에서 기업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업체명 :

과학기술인번호 :

대표자

(인)

* 본인은 기업신용정보 제공·활용 및 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신용정보업자를 통한 귀사의 신용조회사실이 귀사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보 안 각 서

컨설턴트명	과학기술인번호	소속 회사	서 명

상기자는 2021년 신성장동력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이를 통하여 지득한 제반사항에 대해서 이 사업의 전후를 막론하고, 기밀을 엄수할 것과 만약 이를 위반 시, 민.형사상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사)한국BI기술사업화협회장 귀하

[붙임서식2-4] 신성장동력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전문기관 신청서(전문기관)

개인별 컨설턴트 현황 [상근인력]

성 명			직 위		
연 락 처			이 메 일		
최종학위			과학기술인번호		
담당업무/역할			전 공		
			기술사업화경력	년 개월	
경 력	연도	기관	직위	담당업무	비고
	~				
	~				
	~				
기타					

성 명			직 위		
연 락 처			이 메 일		
최종학위			과학기술인번호		
담당업무/역할			전 공		
			기술사업화경력	년 개월	
경 력	연도	기관	직위	담당업무	비고
	~				
	~				
	~				
기타					

[첨부서류2-5] 사업자등록증 사본(전문기관)

[첨부서류2-6] 2020년 재무상태표(전문기관) **미 결산 시, 추정 재무제표 제출*

[첨부서류2-7] 2020년 손익계산서(전문기관) **미 결산 시, 추정 재무제표 제출*

[첨부서류2-8]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전문기관)